

# 서울특별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47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정진술, 문장길, 김평남,  
최웅식, 김기대, 홍성룡,  
전석기, 김용연, 신정호,  
이병도 의원 (10명)

## 1. 제안이유

- 최근, 침대 등의 제품에서 생활 속 방사선이 노출되는 사례가 나타나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생활주변방사선 검출 확인용 측정 장비 대여, 피해 상담 등 시민안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 다.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지방자치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라 함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 및 측정 대행
2. 생활주변방사선 검출 관련 피해 상담
3. 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제4조(재정적 지원) 및 제5조(사업 추진)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 비용 : 214,06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및 조항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라돈 측정기 구매 비용 지원 (제4조)	214,060	-	-	-	-	214,060

#### ○ 비용 추계 전제

- 재정적 지원 대상은 25개 자치구로 한정(424개 동 포함)
- 비용 추계 대상은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 부문으로 한정하고, 그 장비는 라돈측정기 구매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도 모두 지원한다고 가정
- 라돈측정기는 각 자치구 당 5개, 1개 동 당 2개를 비치한다고 가정
  - ▶ (25개 자치구×5개=125개) + (424개 동×2개=848개) = 973개
- 라돈측정기는 구매 후 5년 사용한다고 가정
- 라돈측정기(라돈아이)의 구입 가격은 2018. 10월 성북구청에서 구매한 1개 당 단가 220,000원으로 전제하고, 향후 구입가격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라돈측정기는 무료로 대여함을 전제

#### ○ 비용 추계 방법

- 서울시 대기정책과 자료 참조

○ 비용 추계 산식

- 지원 대상(973개) × 라돈측정기 구매비용(220,000원) = 214,06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박경순

☎ 02-2180-7933

e-mail : kssunbi@seoul.go.kr